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보완

〈물, 순환경제, 오염관리, 생물다양성 등 4대 목표 개정〉

2024. 12. 23.

관 계 부 처 합 동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 보완(요약)

- ① **(배경)** 녹색시장이 확대되고, 투자 대상 구체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은 녹색투자 대상의 적격 활동 목록을 제시
 - **(사례)** EU 등 주요국은 ①투자자와 기업의 녹색투자 기준을 제공하고, ②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녹색분류체계(Taxonomy) 운영
 - **(경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최초 수립(‘21.12),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24.12)
- ② **(주요성과)** K-Taxonomy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이 전체 녹색채권 시장의 65% 수준으로 확대(‘22년 0.64조→’24년 5.16조)
 - 단독 채권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대상 금융상품(녹색자산유동화 증권)을 개발하여 ‘23년 최초 1,555억원(74개), ‘24년에도 3,228억원(139개) 발행
- ③ **(개선내용)**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활동의 범위를 확대(現 74개 → 84개)하고, 활동기준을 구체화하여 그린워싱 우려 해소

<주요 개선내용>

 - **(7→8개 물)** 유출지하수 활용 등 수자원 이용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 물관련 제품·설비 인증(환경신기술인증, 건설신기술인증 등)을 판단기준에 추가
 - **(7→14개 순환경제)** 다회용기 활용, 리필스테이션 등 경제활동 신설하고, 플라스틱 해중합 등 열분해 산업을 경제활동으로 명시
 - **(3→5개 오염)** 오염된 토양을 정화·활용 산업, 실내공기질 측정·저감 활동, 선박 대기오염 방지·관리 산업을 추가
 - **(4개 생물다양성)** 보호·보전·복원의 적용대상 생물종을 멸종위기종에서 야생생물까지 확대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시장 자본유입 기대

 - **(기대효과)** 온실가스 감축·적응 외 4대 목표(‘24년 녹색채권 발행의 17%)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와 경제활동 신설로 환경투자 확대 기대
- ④ **(향후계획)** 기후변화 부문(온실가스 감축·적응) 환경목표 보완(~’25.12.) 및 감축효과가 큰 ‘전환’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순 서

I.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념 및 동향	1
II.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주요성과 및 평가	2
III. '24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주요내용	3
IV. 기대효과	5
V. 향후 추진계획	5

I.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념 및 동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 ▣ (개념)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분류하기 위해 '21년 마련한 체계로 투자자와 기업의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 제시
- ▣ (기능) ①녹색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녹색전환 과정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②그린워싱을 방지하여 금융·투자자들이 녹색 경제활동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국외 동향

【EU】 녹색성 기준인 'EU Taxonomy' 구축

- 지속가능투자 촉진 및 EU 그린딜('19) 이행에 필요한 도구로 기후변화 환경목표('21) 및 순환경제 등 4대 환경목표 세부 기준('23) 제시
- * EU는 '21년 기후변화 관련 환경목표 세부기준을 수립 '22년부터 시행, '24.1월부터는 기후 외 4개 환경목표(물·순환경제·오염·생물다양성)에 대한 환경위임법을 마련 및 시행

【ASEAN】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공통 기준 구축

- 아세안 10개국 회원국간 경제수준, 금융체계, 전환경로 등 상이한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아세안 택소노미' 수립('21.11)
- * '21년 수립 이후, 녹색 및 전환 활동에 대한 세부기준(전력, 가스 등 에너지 부문, '23.3, 수송, 건설·부동산 부문 등, '24.3) 제정·보완
-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는 ASEAN Taxonomy에 부합하는 자체 분류체계 수립

【일본】 탈탄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GX(Green Transformation) 추진전략('23)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탈탄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①GX 경제이행채*, ②국내 생산 촉진 세제, ③탄소가격제 도입
- *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채권'으로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저탄소에너지, 청정수송, 순환경제, 자연자원 등 6개 분야 투자 촉진 및 설비투자 지원

□ 시사점

- ☞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며,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견고한 녹색기준과 지향점 제시 중요

II.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주요성과 및 평가

□ 주요성과

- **(녹색채권 확대)** '23년에 이어 '24년까지 2년 연속 국내 전체 녹색채권의 65% 수준*을 K-Taxonomy가 적용된 한국형 녹색채권으로 발행

* ('23) 4.7조원(64.4%) → ('24) 5.1조원(65.1%)



- **(중소·중견 녹색투자 확대)** 녹색금융 신상품(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개발해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채권 발행 진입장벽을 완화, 2년만에 2배 이상 확대*
* ('23) 1,555억원 → ('24.11월 기준) 3,228억원
- **(금융시장 자발적 활용 확산)** ①녹색투자 성과 기준으로 활용, ②적용시스템 개발* 및 ③별도 부서 신설 등 금융시장 내 분류체계를 활용하는 사례 증가
* 금융위·금감원(KTSS) 및 기술보증기금(KTAS) 등이 금융권 녹색분류체계 판단 시스템 구축

□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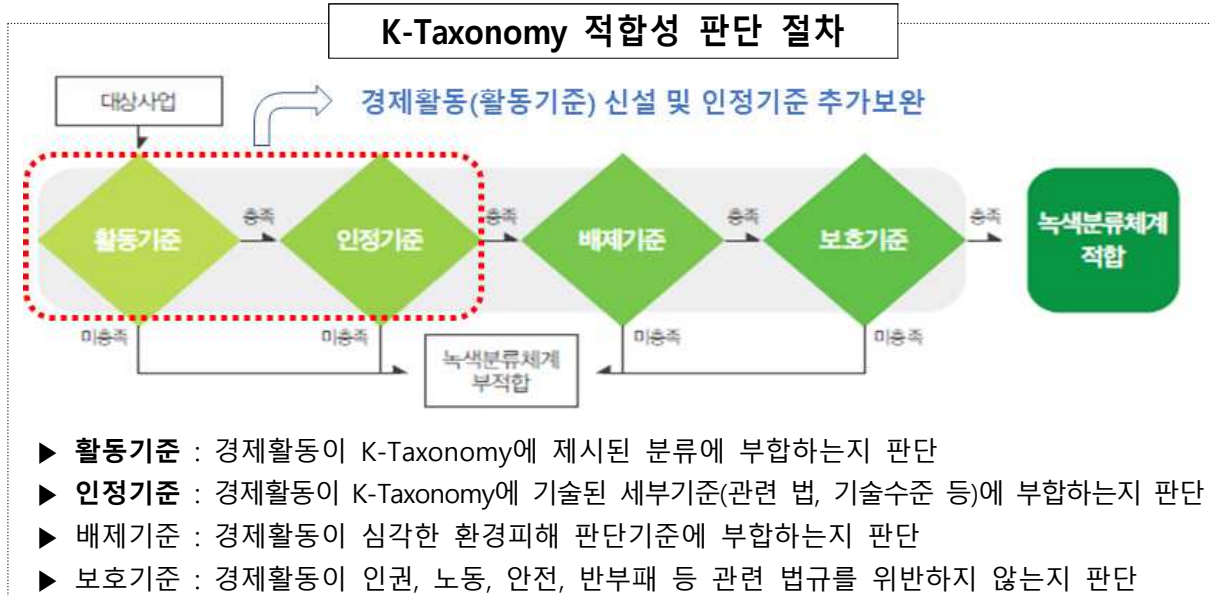
- **(경제활동 다양화)** 물,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오염관리 등 다양한 환경 목표에 해당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신규 발굴 필요
- **(판단기준 명확화)** 국내 정책·제도 여건 등을 반영한 명확한 녹색성 판단 기준(인정기준)이 제시되어 금융·산업계의 실질적 적용 확대 필요

Ⅲ. '24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주요내용

□ 개정 방향

- 기후변화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적응)에 비해 세부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한 물, 순환경제 등 4개 분야* 인증기준 추가 및 신규사업 발굴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 주요 개정내용

- ◆ (활동기준) 신규 경제활동 발굴(기존 4대 목표 21개 → 개정 4대 목표 31개)
 - ◆ (인정기준) 물, 오염 등 4대 분야 세부기준 보완(25개 신설, 6개 개정)
- ⇒ 금융·산업계가 투자할 수 있는 녹색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실질적 활용성 제고

- **(물)** 지하시설물 공사 등으로 유출된 지하수를 활용하여 도로세척(클린로드), 쿨링포그 등 다용도로 활용하는 것 등을 경제활동으로 신설
- 물관련 제품·설비 인증기준에 환경신기술인증, 건설신기술인증 등을 추가하여 판단기준을 확대하고 물산업 활성화 기대

구 분	개정방향	현 재	개정안
경제활동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유도	7개	8개 *(신설) 유출지하수 다양도 활용
인정기준	녹색성 판단기준 명확화		- 6개 경제활동 인정기준 신설 - 2개(하·폐수, 물수요) 인정기준 구체화

- **(순환경제)**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서비스, 다회용기에 내용물만 소분판매하는 리필스테이션 운영 활동 등을 추가

-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열분해하여 재융합하는 해중합 등을 폐기물 열분해 경제활동으로 명시해 관련 시장 확대 기대

구 분	개정방향	현 재	개정안
경제활동	- 전주기 물질 흐름 반영 - 폐기물재활용 경제활동 세분화 등	7개	▶ 14개(생산-소비-관리-재생) (신설) 다회용기 활용, 리필스테이션 구축 운영 등 6개
인정기준	녹색성 판단기준 명확화		- 13개 경제활동 인정기준 신설 - 1개(폐기물에너지회수) 인정기준 구체화

- **(오염방지·관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정화토를 활용하는 활동, 실내 공기질 측정, 오염물질을 저감·처리하는 활동을 녹색으로 새롭게 인정

구 분	개정방향	현 재	개정안
경제활동	- 국내환경 주요분야 신설 - 사각지대 오염활동 추가	3개	▶ 5개 (신설) 실내공기질 관리 및 정화,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등 2개
인정기준	녹색성 판단기준 명확화		- 2개 경제활동 인정기준 신설 - 3개(대기오염방자치리 등) 인정기준 구체화

- **(생물다양성)** 생태계 내 다양한 지역 및 생물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시장 자본유입 활성화 기대

* (기존) 멸종위기 야생생물·해양보호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 (개정) 야생생물

- 산림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신설하고, 한국산림인증제도, 국제 산림인증제도 (FSC, PEFC) 등을 판별기준으로 제시

구 분	개정방향	현 재	개정안
경제활동	- 생태계내 적용 대상 확대 - 생태계적으로 건전한 산림유지·증진활동 신설	4개	▶ 4개(1개 통합, 1개 신설) (신설) 지속가능한 산림 유지·관리
인정기준	녹색성 판단기준 명확화		- 4개 경제활동 인정기준 신설

IV. 기대효과

- **(녹색금융 시장 다변화)** 기후 외 환경목표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신설하여 국가 전반적인 환경개선과 녹색금융 시장의 다변화 기대

※ '24년 발행(예상)액 기준으로 4대 환경목표 해당 비중은 17%에 불과

< '24년도 환경목표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규모 >

환경목표	발행(예상)액[억원]	비중[%]	주요 사업
총 계	51,662	100	-
온실가스 감축	30,479	59.0	무공해 차량 도입, 무공해 수송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생산 등
기후변화 적응	-	0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1,500	2.9	물 공급
순환경제로의 전환	3,188	6.2	폐기물 재활용 관련 설비 구축 등
오염 방지 및 관리	1,500	2.9	대기오염 저감·방지 시설 구축
생물다양성 보전	3,613	7.0	도시내 탄소흡수원 조성
공 통*	11,382	22.0	혁신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제조

- **(사용자 활용성 향상)** 국내 정책·제도 여건 등을 반영한 명확한 녹색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산업·금융계의 실질적 적용 및 활용 확대
- **(자본시장 저변확대)** 개정된 K-Taxonomy를 올해 마련한 '녹색여신 관리지침 (금융위·금감원, '24.12)'에 반영하여 녹색금융 활성화

[As-Is] 녹색채권 시장 중심	[To-Be] 여신 등 자본시장 저변 확대
기준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2~)> (환경부·금융위) 지원 채권/유동화증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기준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2~)> (환경부·금융위) 기준 <녹색여신 관리지침('25.1.~예정)> (금융위·금감원) 지원 채권/유동화증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V. 향후 추진계획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일부 개정본 발표('24.12.)
- 전환부문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개정 추진(~'25.12.)

- 기후변화 관련 2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중심으로 경제활동 확대
- 녹색전환을 위해 감축효과가 큰 '전환' 부문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검토

참고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추진 경과

○ (근거) 녹색분류체계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21.4)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4)」 관련 내용 >

-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 추진 근거 마련
- 환경책임투자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 (수립) '녹색부문' 64개 경제활동, '전환부문' 5개 경제활동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최초 수립('21.12)

○ (보완) 전환부문에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 관련 경제활동을 비롯하여 7건 신규 경제활동 추가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보완 개정('22.12)

- '녹색부문' 67개 경제활동, '전환부문' 7개 경제활동으로 구성

○ (일부개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4개 환경목표 일부 개정(~'24.12)

- 개정주기(3년)*를 총론에 명시, 올해는 4개 환경목표에 대한 경제활동 추가 및 고도화 등 일부 개정 추진

※ '25년도는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개정 예정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4개 환경목표 경제활동 도출' 연구를 토대로 정책설명회 및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개정 초안 마련('24.5)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일부 개정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운영하여, 전문가·업계·관계부처·시민단체 등 의견수렴('24.6~11)

< 협의체 운영 세부내용 >

▣ (1차 협의체) 분야 및 유사 기술 단위로 17개 세부분과를 구성하여 개정안 논의(6.27~7.26)

* 환경부 관련 실·국, 관련 부처, 학계, 전문가, 산업계 등 총 139개 기관 157명 참석

▣ (2차 협의체) 1차 협의체를 일부 통합하여 4개 분과로 구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제활동에 대한 심층 분석 및 논의(9.24~26)

* 환경부 관련 실·국, 관련 부처, 학계, 전문가, 산업계 등 총 63개 기관 105명 참석

▣ (3차 협의체) 금융계 및 시민단체(10.25~10.28), 자원순환 분과(열분해) 등 개정안 검토

참고2

4대 환경목표별 경제활동 목록

환경목표	분야	경제활동명	개정/신설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8개)	물 수급	(1) 물 공급	개정
		(2) 물 수요 관리	개정
	하·폐수	(3) 하수·폐수 처리 및 가축분뇨 정화	개정
	토양·지하수	(4)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정화	개정
		(5)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신설
	물 순환	(6) 물 재이용	개정
		(7) 대체 수자원 활용	개정
		(8) 비점오염저감(저영향 개발(LID) 등)	개정
4. 순환경제로의 전환 (14개)	생산	(1) 재생원료·순환자원 생산	신설
		(2) 재생원료·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신설
		(3)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	신설
	소비	(1) 다회용기 활용	신설
		(2) 리필스테이션 구축·운영	신설
	관리	(1) 폐기물 수거·회수·선별·분리	개정
		(2) 사용 후 제품의 오염 제거 및 해체	신설
	재생	(1) 폐기물 재사용	개정
		(2) 폐기물 재생이용	개정
		(3) 폐기물 재제조	개정
		(4) 폐기물의 화학적 재활용	개정
		(5) 폐기물 에너지 회수	개정
		(6) 혐기성 소화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	개정
		(7)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개정
5. 오염 방지 및 관리 (5개)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1)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개정
		(2) 악취 방지 및 저감	개정
	생활환경 관리	(3) 실내공기질 관리 및 정화	신설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4)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개정
	토양오염 방지 및 처리	(5)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신설
6. 생물다양성 보전 (4개)	생물다양성	(1)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보전·복원	개정
		(2)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개정
		(3)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개정
		(4) 지속가능한 산림 유지·관리	신설